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이은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085 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 발 지: 이은림, 강석주, 구미경, 김경훈, 김유남, 김영철, 김정훈, 김원중, 김원당, 김원태, 김청호, 김원중, 김태수, 김청자, 남궁역, 남창진, 김형재, 남궁역, 박충력, 박충역, 박성연, 박영한, 박충경태, 박환희, 산영희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성배, 이종된, 이종태, 이종환, 정준호, 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

황철규 의원(40명)

1. 제안이유

○ 조례체계를 정비하고, 상위법령인 「악취방지법」 개정시행에 따라 악취실태조사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등의 관련 조항을 수정·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악취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. (안 제2조)
- 나.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. (안 제4조)
- 다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함. (안 제5조~ 제6조)
- 라.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수정함. (안 제8조)

- 마.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. (안 제9조)
- 바.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,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0조~제 12조)
- 사. 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3조)
- 아. 기타 상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악취방지법

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악취방지법」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악취"란 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 - 2. "생활악취"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.
 - 3. "악취배출시설"이란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사업자의 책무)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,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(試料)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·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시장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,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은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악취지도의 작성) ① 시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.
 -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8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
 - 2.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, 유지관리

- 3.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
- 4.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악취방지(저감)시설 설치、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.
 - 1. 당연직 : 생활악취 및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
 - 2. 위촉직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생활악취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 -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、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10조(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.
 - 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,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.
 - ③ 보조금의 신청, 집행 시기, 구비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신고 의무)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보조 받은 사업을 개시·종료·폐지하고자 하는 경우
 - 2. 보조금 신청을 받은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- 제12조(보조금의 반환 조치)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 - 1.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
 - 2.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
 - 3.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
 - 4. 그 밖에 교부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

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②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13조(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) 시장은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14조(지도、감독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、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